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575호 2023. 5. 1.(월)

입 법 예 고

고 시

	1				
회					
람					

발행: 고성군, 편집: 인구청년추진단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 공고 제2023-721호

고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고성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3. 5. 1.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개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의 내용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적용범위(안 제1 ~ 안 2조)
- 나.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변호인·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, 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,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7조)
- 라. 지원신청, 지원안내,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(안 제8조 ~ 안 제16조)

4. 의견 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.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
 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
 - 2) 전화번호: (055)670-2052. 팩스번호: (055) 670-2059

다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

※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(전화055-670-20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고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.

고성군 규칙 제 호

고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고성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된다. 이 경우 영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은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.

제3조(적극행정 책임관 등) ① 「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,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. 제4조(적극행정위원회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
- 2. 지원 시기, 지원 범위 및 방법 결정
- 3.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변호인·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) ①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. 다만, 군수는 「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관한 조례」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·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.
 - 1. 고소 · 고발 등의 경우: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
- 2.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: 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(대법원 규칙)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

-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·재정 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,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,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,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령(군의 조례나 규칙을 포함한다)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.

제6조(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)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미리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
-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.
 - 1.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
 - 2. 고성군 고문변호사
 - 3. 정부법무공단(다만,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)

제7조(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)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 신청)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
- 2.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
- 3.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, 출석통지서, 소장 사본,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
 - 4.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 - 5.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
 - 6.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제9조(지원 절차 안내 등)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, 그 밖에 지원

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 · 고지하여야 한다.

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 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) ①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 상정·심의)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, 지원 범위 등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·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2조(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)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자료의 제출)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
- 2.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- 3.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
- 4.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·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류 또는 판결문 사본(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)
- 5.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책임관이 요청한 서류

제14조(보고)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 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 정할 수 있다.

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원의 취소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
- 2.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,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(다만,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)
- 3.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 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
- 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·의결하는 경우 제16조(변호인 보수의 반환)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-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-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지원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	-	지 게 저 ㅋ	 L에 서 이	 소명에 관	. 치. 기 º	 기 시 치				
			「 आ ハヨ :	I	[안 시판	1 건경	·			
신	담 당 자	성명		생년월일		T	성별			
청	1 0 7	소속			직급					
인	담당업무									
신	신 청 내 용 □ 변호인 보수 지원(요청 금액 :) □ 변호인 선임 지원									
				징계의	결 요구					
	계 의 결		요구일			관할 징계	세위원회			
요	구 개 요									
	계 의 결 구 사 유									
_ 	^고 비서류	□ 변호인 □ 적극형		사본 등 입증 사본 및 세 하는 자료						
	신청인 🔾)))) 은 상기] 내용이 모드	두 사실임을	확인하며,	신청내용	이 허위에 의한	<u>-</u>		
	이거나 지	원을 받은	이후라도 요	그건이 미비한	: 점이 밝	혀진 경우	² , 지원 목적에			
위	반하여 지원	원금 등을 /	사용한 경우	또는 이 지침	에서 정한	제반 준수	누사항을 정당한	<u>-</u>		
사	유없이 이	행하지 않	는 경우에는	: 지원의 취	소.환수 및	및 기타	불이익 처분을	.		
감	수함을 확	약하며 위의	와 같이 징계	절차에서의	소명에 괸	·한 지원·	을 신청합니다.			
			년	월	일					
				신청	인 :	(인)			
ت	.성군수 ⁻	귀하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			소송 등	의 지원	신청서				
신	담 당 자	성명		생년월일			성별		
청	담당사	소속			직급				
인	담당업무								
신	청 내 용	□ 변호인] 또는 소송] 또는 소송 관 또는 법	·대리인의 선	선임 지원	성 금액 :)	
			고소·고발 는	<u>=</u>	민사싱	책임과	관련된	소송	
사	건 번 호	접수일	관할 및	및 사건번호	접수일	관	할 및 시	l 건 번호	
,									
사	건 개 요	스시키	1차루비 초	서투기 시 . ㅅ	자시님 스	소계소 2	조대 드	이즈워린	
 =	구비서류	□ 변호인	시통보, 출 ² 또는 소송 정임을 소 ^다 의 서류	대리인 등의	비 선임계약				
목 시	신청인 ○○○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,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,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.환수 및 기타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		
			년	월	일				
				신청	당인 :	(인)		
	2성군수 =	귀하	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

	신청자			과한 지계	기 게 이 건	7) O)	- 7) (0)	기네	지원		
연번	소속	성명	성별	신청일	관일 경제 위원회	징계의결 요구 사유	시전 결정일	시원 내용	결과	지원 취소 .반환 등	비고

[별지 제4호서식]

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

	신]청자			시기 만하				수사	7] <u>0</u>]	
연번	소속	성명	성별	신청일	시신인을 및 사건번호	사건개요	지원 결정일	지원내용	및 소송 결과	시원 취소 .반환 등	비고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
○ 성명(단체명):
○ 주 소:
○ 전화번호:

\circ	의견	내용(잔·변	난 의견과	ユ	이유)	

제정안	찬반	의견	수정안	수정사유
세정인	찬성	반대	ተ/8 ህ	ተ정ላተπ

고성군 고시 제2023 - 58호

고성군관리계획(문화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1.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의 고성군관리계획(문화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 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- 2. 관계도서 【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가능】는 고성군(도시교통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3. 4. 20. 고 성 군 수

- 1. 군관리계획(문화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아래 참조
- 2. 관계도면: 게재 생략

고성군관리계획(문화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

가. 공원 결정 조서

u	도면표시	700	공원의	A) 7)		면 적(m²)		최초	
구분	번 호	공원명	종 류	위 치	기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신설	24	힐링공원	문화공원	고성읍 교사리 53번지	-	증)17,893	17,893	-	-

나. 공원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공원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24	힐링공원	• 문화공원 신설 - 위치: 고성읍 교사리 53번지 - 면적: 17,893㎡	• (구)공설운동장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휴 식공간과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해 군계획시설(문화공원)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 립하고자 함.

2.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

가. 공원조성계획 총괄표

	구 분		면 적(m²)		구성비	비고
	T U	기정	변 경	경 변경후 (%)		n 77
합 계		-	증)17,893	17,893	100.0	
	공원시설	1	증)14,822	14,822	83.0	• 시설율 : 83.0%
	도로 및 광장	-	증)3,989	3,989	22.3	•도로, 마당 1개소, 광장 2개소
	조경시설	-	증)4,255	4,255	23.8	• 잔디마루, 힐링원
	휴양시설	-	증)830	830	4.7	• 휴게쉼터 2개소
	운동시설	-	증)1,596	1,596	9.0	• 체력단련장, 자연체험장
	교양시설	-	증)1,942	1,942	10.8	• 어린이도서관
	편익시설	-	증)2,210	2,210	12.4	• 주차장
	녹지	-	증)3,071	3,071	17.0	• 녹지율 : 17.0%

나. 세부시설별 결정 조서

			면 적	구성비		건축면적(㎡))	
	구 등	<u>-</u>	(m²)	(%)	동 수	바닥면적	연면적	비고
	합 7	1	17,893	100.0	-	1,675.62	2,338.80	-
	공원시	설	14,822	83.0	-	1,675.62	2,338.80	-
		소계	3,989	22.3	-	-	-	-
	-	도로	1,807	10.1	-	-	-	-
도로 및 광장	1-1	벚꽃마당	1,732	9.7	-	-	-	-
	1-2	진입광장	248	1.4	-	-	-	-
	1-3	중앙광장	202	1.1	-	-	-	-
		소계	4,255	23.8	-	-	-	-
조경시설	2-1	잔디마루	3,100	17.3	-	-	-	-
	2-2	힐링원	1,155	6.5	-	-	-	-
		소계	830	4.7	-	-	-	-
휴양시설	3-1	휴게쉼터1	636	3.6	-	-	-	-
	3-2	휴게쉼터2	194	1.1	-	-	-	-
		소계	1,596	9.0	-	-	-	-
운동시설	4-1	체력단련장	727	4.1	-	-	-	-
	4-2	자연체험장	869	4.9	-	-	-	-
الرادادادا		소계	1,942	10.8	-	1,675.62	2,338.80	-
교양시설	5-1	어린이도서관	1,942	10.8	-	1,675.62	2,338.80	-
퍼시기기	소계	2,210	12.4	-	-	-	-	
편익시설	6-1	주차장	2,210	12.4	-	-	-	-
	6-1 주차장 녹지		3,071	17.0	-	-	-	-

다. 도로조서

구분	등급	류 별	번 호	폭 원 (m)	연 장 (m)	면 적 (m²)	기능	시 점	중 점	비고
겨	1	기정	-	-	-	-	-	-	-	
74		변경	-	-	422.0	1,807.0	-	-	-	
신설	소로	3류	1	4.0	218.0	861.0	연결로	벚꽃마당	휴게쉼터1	
신설	소로	3류	2	6.0	40.0	254.0	연결로	소로3-1	중앙광장	
신설	소로	3류	3	4.0	50.0	210.0	연결로	벚꽃마당	중앙광장	
신설	소로	3류	4	3.0	26.0	80.0	연결로	소로3-1	중앙광장	
신설	소로	3류	5	6.0	35.0	210.0	연결로	어린이도서관	중앙광장	
신설	소로	3류	6	3.0	38.0	120.0	연결로	어린이도서관	주차장	
신설	소로	3류	7	3.0	15.0	72.0	진입로	진입광장	남측부지경계	

고성군 고시 제2023-61호

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 확정 고시

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이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4. 21. 고 성 군 수

가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: 천 원)

회	계	별	경 정 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증 감 액	증 감 율 (%)
합		계	709,164,914	684,205,897	24,959,017	3.65
일	반 회	계	638,503,097	614,265,594	24,237,503	3.95
특	별 회	계	70,661,817	69,940,303	721,514	1.03
	상 수 도 사	업	9,944,310	9,944,310	0	0.00
	하 수 도 사	업	5,691,944	5,691,944	0	0.00
	산 업 단 지 조 성 사	업	1,193,000	1,693,000	△500,000	△29.53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시	- 업	3,463,460	3,463,460	0	0.00
	중 소 기 업 육 성 자	급	4,678,000	4,678,000	0	0.00
	주 차	장	6,303,892	5,082,392	1,221,500	24.03
	수 질 개	선	94,874	94,874	0	0.00
	장 기 미 집 행 도 계 획 시 설 대 지 보	시 상	103,000	103,000	0	0.00
	농 어 촌 발 전 자 금 운	용	9,018,000	9,018,000	0	0.00
	사 회 복	지	2,013,785	2,013,771	14	0.00
	고 성 군 청 사 건	립	27,121,000	27,121,000	0	0.00
	공 공 실 버 주	택	1,036,552	1,036,552	0	0.00

나. 일반회계

○ 세 입

(단위: 천 원)

구						분	경	정	예	산	액	7]	정	예	산	액	증	감		액
합						계			63	38,503	,097			62	14,265	,594			24,237	,503
지			방			세			4	12,688	,042			4	11,800	,000			888	,042
세		외		수		입]	16,553	,266]	L5,685	,266			868	,000
지	방		亚	ĵ	부	세			26	59,088	,000			24	16,718	3,000			22,370	,000
조	정	亚	Ţ	己	급	아			2	26,678	,222			2	26,678	3,222				-
보			조			급			24	13,212	,054			24	43,110	,593			101	,461
	국	고	보	조	금	ド			18	32,643	,460			18	32,018	3,153			625	,307
	도	비	보	조	급	아			6	60,568	,594			(51,092	2,440			△523	,846
보 전	선 수	입 등	등 및	내	부 거	래			4	10,283	,513			4	10,273	3,513			10	,000
	보	전	2	È	입	바			2	20,000	,000			4	20,000	,000				-
	내	J	부	ア	1	래			2	20,283	,513			6	20,273	3,513			10	,000

○ 세 출

(단위: 천 원)

분	0)	:	•		부	문	경	정	예	산	액	기	정	예	산	액	증	감		액
합						계			63	38,503	,097			6.	L4,265	,594		2	24,237	,503
일	반	공	•	공	행	정			4	23,673	,077			4	22,627	,954			1,045	,123
공	공 결	될 서		및	인	: 전			-	11,962	,292			-	L0,492	,476			1,469	,816
亚						육				3,673	,622				3,718	,615			△44.	,993
문	화	-	및		관	광			(59,124	,689			(64,221	,742			4,902	,947
환						경			Ę	59,652	,021			(60,450	,567			△798.	,546
사		회		복	-	지			15	51,823	,579			15	51,990	,983			△167.	,404
보						건			-	13,118	,045			-	12,255	,950			862.	,095
농	림	해		양	수	산			12	24,833	,631			1.	19,882	,744			4,950	,887
산 '	업 •	중	소기] 업	및 에	너지			-	16,361	,168			-	12,758	,855			3,602	,313
교	통	_	및		물	류			4	28,636	,960			4	24,889	,393			3,747	,567
국	토	및	지	역	개	발			Ę	54,099	,809			4	18,260	,011			5,839	,798
예			비			비			-	14,609	,106			-	L5,840	,106		Δ	1,231	,000
기						타			(66,935	,098			(66,876	,198			58,	,900

다. 특별회계

○ 세 입

(단위: 천 원)

구						분	경	정	예	산	액	7]	정	예	산	액	증	감	액
합						계			7	70,661	,817				69,940),303			721,514
지			방			세					-					_			-
세		외		수		입				9,466	,160				9,466	5,160			-
지	방	-	亚		부	세					-					_			-
조	정	교	j	早	금	ド					-					_			-
보			조			급				3,586	,917				3,586	5,917			-
	국	고	보	조	금	능				2,833	,511				2,833	3,511			-
	도	刊	보	조	금	아				753	,406				753	3,406			-
보 전	전 수	입등	등 및	내	부 거	래			Ę	57,608	,740				56,887	7,226			721,514
	보	전	2	수	입	바			4	14,993	,493				44,993	3,493			_
	내		부	7	식	래]	12,615	,247				11,893	3,733			721,514

○ 세 출

(단위: 천 원)

분	0)	:	•		부		문	경	정	예	산	액	기	정	예	산	액	증	감	액
합							계			,	70,661	,817			(69,940	,303			721,514
일	반	공	•	공	1	행	정				27,121	,000			4	27,121	,000			-
공	공 결	될 서		및		안	전					-					-			-
亚							육					-					-			-
문	화	-	및		관		광					-					-			-
환							경				15,668	,414				15,668	,414			-
사		회		복	Ļ		지				2,013	,785				2,013	,771			14
보							건					-					-			-
농	림	해		양	4	수 수	산				9,018	,000				9,018	,000			-
산 '	업・	중	소기] 업	및	에 너	기				8,141	,460				8,141	,460			-
교	통	_	및		물	•	류				6,303	,892				5,082	,392			1,221,500
국	토	및	지	연]	개	발				2,332	,552				2,832	,552		4	△500,000
예			비				비					-					-			-
기							타				62	,714				62	,714			-

고성군 고시 제2023-64호

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> 2023. 4. 26. 고 성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
		(별지	참조)	

○ 도로명주소 변경

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변경사유
	(년	결 지참조)	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폐지고시일	폐지사유
	(별지참조)	

-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(☎055-670-269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도로명주소 사용
 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\bigcirc	도로명주소	변경	듲
\cup	<u> </u>	11.0	0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

					_	
연 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하이면 월홍리 754	하이면 월흥6길 52	2023.04.26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하이면 월흥리)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	
2	회화면 삼덕리 산75-13	회화면 남해안대로 4192-11	2023.04.26.	건물번호부여신청	남해안을 잇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부여	
3	대가면 연지리 564	대가면 연지2길 138-14	2023.04.26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대가면 연지리)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	
4	영현면 봉발리 545-2	영현면 부포로 481	2023.04.26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상리면 부포리)을 이용하여 부포로로 명명	
5	거류면 신용리 2029	거류면 신용8길 19-10	2023.04.26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거류면 신용리)을 이용하는 여덟번째 도로	
6	동해면 봉암리 46	동해면 조선특구로 426	2023.04.26.	건물번호부여신청	동해면 조선특구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	

도로명주소 변경

연 번	도로명주소 변경전	도로명주소 변경후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변경 사유	비고
1	영오면 양산2길 104-10, 104-12	영오면 양산2길 104-12	2023.04.26.	건물번호 합병	